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(3.20.자) 안내

1. 관련

- 가.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(전문대학)적용사항 안내 (2023.1.27., 고등직업교육정책과-764)
- 나.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8판 안내(2023.2.21., 고등직업교육정책과-1400)
- 다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(제8판, 2023.3.16. 접수)

2.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(제8판)」를 우리부에 알려왔습니다. ※ [붙임] 참조

가. 주요 개정사항 :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*

* '23.1.30.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

구분	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	
	<개정 전>	<개정 후>
내용	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 ·약국 및 <u>대중교통수단</u> 의 실내	<u>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</u> ※ 대형시설(마트·역사 등)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

나. 시행 : 2023. 3. 20.(월) 0시부터

- 3. 이와 관련, 각 대학에서는 **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3.20.(월)부터 원
활히 시행**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4. 아울러, 「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8판, 2023.2.21.)」는 해당 사항을
반영하여 추후 개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1. 중앙방역대책본부-4174(2023.3.15.) 공문 1부.

2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8판) 1부.

3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8판) FAQ 1부. 끝.

교 육 부 장 관



수신자 사립전문대학, 공립전문대학,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

주무관

이학모

행정사무관

황선국

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
전결 2023. 3. 20.
이상우

협조자

시행 고등직업교육정책과-2118 (2023. 3. 20.)

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(어진동, 교육부)

/ <https://www.mo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6419

팩스번호 044-203-6217

/ hakmolee@korea.kr

/ 대국민 공개